

기안용지

발행처 본사번호	부속번호 224-819	연월일 1969. 12. 27	작성부서 주요담당부서
처리과정	(수)		
작성일자	73. 12. 27		
보급일자			
보급처 부서 직급 직명	부서 직급 직명	부서 직급 직명	부서 직급 직명
작성인명	작성인명	작성인명	작성인명
작성인명	작성인명	작성인명	작성인명

경수 번호	순 번호	과 명	장 소	동 명
		과 안 잡 조		

제 목: **홍남지구 부지구확장리사업 변경 실시**

지안: 내부결재

1. 1573. 9. 18자 홍남지구 확장리조합 중앙집회 시정정보부부 요청된 홍남지구 확장리사업 기획안부 변경안(대지 25선 사업부) 및 이영관장 안이 개표 지구확장리사업법 제32조 및 동법 제35조 위헌처의한 14일간 종말이 공하고 73. 11. 27 사업변형인행 신청한바 건설부 품로 제12호(73. 11. 24)로 사업변경 실시인가 되었거 기획내용을 표지소용 자 된 이영관대인에게 종말대 공하고져 법안과 같이 시행코져 합니다.

2. 산본 품로
- 가. 공포종별: 사업부별시공표 지 정
 - 나. 공포신분: 공포시여의록 2개사(조합 및 조합)
 - 다. 소포인상
 - 라. 지출비목: 홍남지구 확장리사업조합 부담
 - 마. 지출방법: 품로 후 영구익 의함

3. 건설부 양관의 처시사항인 소문 2-25선 사업이선 종로 1-62호

선관(0부본관)은 소토3읍을 연결하여 다카이는 환기 계획 수변시 조치되지 않나
다. **및 아용원외의 500m안 이설**

제2안

시흥부탄식 공로 지

시행안

홍남부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안~~ 공로

공고안심사 1973. 12. 22	제 22호
심자 자변제거권	법무부장관

1. 홍남부지구획정리사업 변경안(건설부 공로 제112호 73. 11. 24)은 지
구획정리사업(제3)의 규정에서 외하여 다음과 같이 **공합** 공합니다.

2. 당개도시는 양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제과 및 홍남부지구획정리조합
이 비준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사업 개요

1. 사업명 : 서울 홍남부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지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용은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구 일
부.

3. 시행장 : 홍남부지구획정리조합

4. 변경사항:

(1) 시행면적 : 당초 509,796㎡(154,217평,

변경 556,158㎡(168,231평,

(2) 가로변경조치

로 선 명	폭 원	당 연 장 면 적	초 연 장 면 적	변 경 연 장 면 적	신 연 장 면 적	실 적	비 고
종로1-62	20m				131㎡	2,620㎡	
소로2-2	8 "				155.5㎡	1,244㎡	
소로2-3	"				88㎡	704㎡	

모 선 명	폭 인	담 소		변 경 선		비 고
		인 장	면 적	인 장	면 적	
소토3-19	6 m	175 m	1,050 m ²	82 m	47.72 m ²	
소토3-20	6 "	120	720 m ²	복지	복지	
소토3-26	6 "	233 m	1,398 m ²	220 m	1,356 m ²	
소토3-28	"	40.5 "	243 "	15	200	
소토3-30	"	47.5 "	2,850 "	827 "	4,985 "	
소토3-30	"					126 m 756 m ²
소토3-37	"					102 m 612 "

(3) 공원 변경 조석

용 도	영 장		변 경 영 장		비 고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마동 공원	58부록	1,322 m ²	68부록	1,982 m ²	면적증가 및 위치변경
	12부록	792 "	58부록	792 "	

(4) 유의 사항

가. 서울도시계획 총남부지구 환경개선사업 변경 심사내 지구 ^외
부지는 사업 실시기간중(공사)에 사업집행상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이 의하인
총남부지구 환경개선사업에 사용케 되오니 합치 예정지 지정 및 절차공사가 완료된
뒤까지는 임지를 실시하는 경작 농업을 금한 것이며 상권행위를 합리적 행위는
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이 의하 사전에 ^{시정} ~~상권행위~~의 허가를 받을 것.

나.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권이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신규토지
소유자의 연서로 신고함.

(5) 이 공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 동지향 또는 송환된 자는 토지 ^{소유권} ~~소유권~~ 및 이해관계인이 ^합 ~~합~~

니다.

113 12

서울특별시

제3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용남포지구 확장리사업 변경 실시 공포

1. 귀하의 소유토지는 73·10·16(서울시 공고 제193호)로 포지구 확장리사업
 인법 제4조 및 동법 제33조익 규정이 의하여 증람이 공하고 건설부장관이 개
 영인가 신청하였던바 73·11·24(건설부 공고 제112호)로 인가되었과 사업 실시
 공포합니다.

2. 관가토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 확장리제1과 및 용남포지구 확장리사업조
 합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 : 공고문 사본 4일부

수신처 : 중구 산림동 162-1059 디림아파트 원명선

성동구 신당동 346-25 한규건

" 355-7 윤승규

서대문구 미군동 66-1 이정환

종로구 원남동 159-1 최명준

제4안

수신 서대문구청장

1. 용남포지구 확장리사업은 73·11·27(건설부 공고 제112호)로 사업변경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113호로 포지구 확장리사업 실시변경공고를 시행

자료 있으나 본 시군이 대한 지용법 판공 및 권록업의 실시가 시선이 연도부
합기 바람.

- 첨부 : 1. 공고문 사본 1부.
- 2. 지천도 1부.

제5안

수신 공보실장 ²⁴⁴²

제목 신문 공고의뢰

1. 흥남포지구획정리사업실시 변경계획을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공표
코저하오니 일간지(주간 및 석간) 및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이산액 : 2판 x 30행 x 400 x 2개사
- 나. 이산비목 : 흥남포지구획정리사업조합부담.

첨부 : 공고문 사본 3부.

제6안

수신 흥남포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이 성재

제목 동 건

1. 귀 조합이 요청하신 흥남포지구획정리사업 변경인가에 대하여는 별첨
건설부장관 공고문 사본 및 시을지 공고 제 호()와 같이 실시 변경공
고 하였기 통보하며

2. 소로 3-25호선 시점에서 종로 7-62호선간(63부록간) 이는 소로3부들

여걸 시설하여야 하며 아동공원은 도로부단으로 건설하여 활지구를 수립토록
발견이며

3. 귀 조합이 관가도서를 비치하여 로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기 공람
영공 각서기 바랍니다.

첨부 : 관가도서 및 공도문 사본 과 일부.

기안

수신 : 도시기획과장 - 2444

제목 : 공도문

1. 변경공문 및 공도문 사본과 같이 종합토지구획정리사업이 변경인가되
었다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관가도서, 공도문 사본 및 고지문 사본 과 일부. 공.